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5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105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 (안 제58조제1항 등)	3
나.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 정비 (안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9조)	7
다. 공장등급 지정 취소 요건 확대 등(안 제59조)	16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105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24.

다. 회 부 일 : 2025. 6.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3. 검토의견

가.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
(안 제58조제1항 등)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u>공장인증</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u>제작공장</u> (이하 “ <u>철강구조물공장</u> ”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 <u>공장인증</u> ”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u>등급지정</u>) ① ----- ----- ----- <u>제작능력을 심사하여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u> (이하 “ <u>철강구조물공장</u> ”이라 한다)의 등급(이하 “ <u>공장등급</u> ”이라 한다)을 지정-----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장 등급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와 정기심사, 이전심사,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58조제1항¹⁾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함)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는 철강구조물의 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7년에 신설²⁾된 사항으로, 건설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의 제작능력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심사하여 등급별로 인증함으로써, 수요자가 구조물의 제작규모에 적합한 공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³⁾

2024년 2월 27일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하여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⁴⁾ 계획을

2) (舊)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5287호, 1997.1.13. 일부개정, 1999.1.1. 시행)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鐵鋼構造工場”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工場認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국토교통부고시)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27.

- 2022년 말 현재, 25개 부·처·청에서 257개 인증제도를 운영 중
지속적인 인증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설이 증가하여 2010년 말 대비 100여개 증가
[(‘10) 155 → (‘22) 257)

발표한 바 있음.

동 계획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중 ‘**④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 인증 제외**’에는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대해서도, 인증 대상이 ‘공장(사업장)’으로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지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정비 방안⁵⁾에 포함하고 있음.

【 인증제도 개선 방향 】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인증제도 정비 (기업부담 경감)	①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② 유사·중복 인증 통합 ③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 ④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
②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⑤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⑥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 ⑦ 해외인증 인정 확대
③ 관리시스템 개선	⑧ 인증 신설 절차 강화 ⑨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27. p.4

5)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27. 별첨 자료

④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정비방안	조치사항	완료 시한
23	국토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공장(사업장)으로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지정 제도로 전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24 下

④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

✓ (사례)수산물식품 명인 (해수부)

- ▶(현황) 수산물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등의 우수한 자를 수산물식품 명인으로 인증하는 제도
- ▶(개선)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며 지정제도로 전환



✓ (사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고용부)

- ▶(현황)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직접 고용하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
- ▶(개선) 서류심사를 통한 지정제도로 전환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27. p.8.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인증제도 정비방안에 따라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⁶⁾⁷⁾

6)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공장의 인증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등급의 분류(1~4등급)와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함.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③ 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나.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 정비
(안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 철강구조물공장 운영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 ②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능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이하 “ 정기심사 ”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 이전심사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 실태점검 ”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과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 그 요청에 따라야----.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심사, 이전심사 또는 실태점검 결과 공장등급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의2. (생략) 4. 제58조제1항에 따라 <u>공장인증</u>을 신청하는 자 <u><신설></u>	<u>명할 수 있다.</u>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장등급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와 정기심사, 이전심사,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수수료) -----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 <u>공장등급의 지정</u>----- 5. 제58조제2항에 따라 공장등급 지정의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신청하는 자

현행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⁸⁾는 철강구조물공장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

8)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현행법 제58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정안 제58조제2항은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 제58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시행령 제96조제7항 및 제8항⁹⁾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공장의 양수 또는 이전 시 실시하는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기심사'와 '이전심사'로 명확하게 하고, 그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실태점검'과 실태점검의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의 '서류 또는 현장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등급지정 제도 운영과 관련한 심사 및 점검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실태조사 후 '결과 공표'는 개정안의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59조와 같이 공장등급 지정 취소 요건을 확대(안 제59조제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¹⁰⁾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현행법 및 개정안의 내용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철강구조물 공장에 대한 제작능력 심사 및 실태점검 등	-제58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u>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u>(이하 이 조에서 "<u>실태조사</u>")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u>결과를 공표</u>할 수 있음.	-안 제58조제2항-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능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이하 "<u>정기심사</u>")라 한다)를 받아야 함.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u>이전심사</u>")라 한다)를 받아야 함.

10) 개정안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8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3. 제58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령에서 ‘정기적 조사’와 ‘공장양수 또는 이전 시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5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u>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u>(이하 “<u>실태점검</u>”이라 한다)을 할 수 있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관련 서류나 현장을 조사</u>하게 할 수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 제58조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¹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정안 제58조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과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공장인증 등)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이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요청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의 조치를 협조하는 개념이 아닌 등급지정 제도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현행법 및 개정안의 내용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실태조사 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58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 -실태조사를 위하여 <u>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u> (이하 “<u>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u>”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u>정당한</u> 사유가 없으면 이에 <u>협조하여야 함</u>.	-안 제58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 -실태점검을 위하여 <u>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과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u>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u>특별한</u> 사유가 없으면 그 <u>요청에 따라야 함</u>.

다음으로, 개정안 제58조제5항 및 제6항은 타 항에서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하고, 정기심사, 이전심사, 실태점검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임.

【 현행법 및 개정안의 내용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실태조사 또는 실태점검	-제5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u>실태조사 결과</u> 공장인증의 <u>기준에</u>	-안 제58조제5항- ○국토교통부장관 -<u>정기심사, 이전심사 또는 실태점</u>

구분	현행	개정안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u>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u>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u>검 결과 공장등급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u> 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대통령령 위임	-제58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공장인증</u> 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 제58조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u>공장등급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와 정기심사, 이전심사, 실태점검</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한편, 현행법 제79조¹²⁾는 제4호에서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 내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정안 제79조는 안 제4호에서는 ‘공장인증’을 ‘공장등급의 지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5호에서는 공장등급 지정의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안 제79조제4호는 공장인증 제도의 공장등급지정 제도 전환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79조제5호는 안 제58조제2항¹³⁾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13) 개정안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 ②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능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공장을 이전

에서 정기심사와 이전심사를 규정함에 따라 해당 심사에 대한 수수료 납부¹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현행법 및 개정안의 내용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수수료 부담	-제79조제4호- ○제58조제1항에 따라 <u>공장인증</u> 을 신청하는 자	-안 제79조제4호- ○제58조제1항에 따라 <u>공장등급의 지정</u> 을 신청하는 자

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4) 현행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9는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공장인증 수수료 산출기준과 사후관리 심사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3.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4호 관련)

구분	금액																
가. 기본수수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공장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table><tr><th rowspan="2">등급</th><th colspan="2">필요인원</th><th rowspan="2">소요기간</th></tr><tr><th>특급기술인 (5급 상당)</th><th>고급기술인 (6급·7급 상당)</th></tr><tr><td>1급</td><td rowspan="4">1명</td><td rowspan="4">2명</td><td>3일</td></tr><tr><td>2급</td><td>2일</td></tr><tr><td>3급</td><td>1.5일</td></tr><tr><td>4급</td><td>1.5일</td></tr></table>	등급	필요인원		소요기간	특급기술인 (5급 상당)	고급기술인 (6급·7급 상당)	1급	1명	2명	3일	2급	2일	3급	1.5일	4급	1.5일
	등급		필요인원			소요기간											
		특급기술인 (5급 상당)	고급기술인 (6급·7급 상당)														
	1급	1명	2명	3일													
	2급			2일													
3급	1.5일																
4급	1.5일																
3)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증심의위원 수당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일반관리비	(가+나+다)의 5%																

<비고>

2.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사후관리 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가목, 나목 및 라목을 준용하되, 나목의 공장심사원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인 1명과 고급기술인 1명으로 하고, 출장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u><신 설></u> ※시행규칙 별표9: 공장인증 수수료 산출기준과 사후관리 심사수수료 규정	-안 제79조제5호- ○제58조제2항에 따라 공장등급 지정의 <u>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u> 를 신청하는 자

국토교통부는 등급 지정을 위한 심사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 점검을 구분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 공장등급 지정 취소 요건 확대 등(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공장인증을 받은</u>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공장인증을 취소</u>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공장인증을</u>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공장인증을 받은 경우</u> <신설> <신설>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u>공장인증</u>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공장등급 지정의 취소 등) ① -- ----- <u>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u>-- ----- ----- <u>지정을 취소</u>----- ---. ----- ---- <u>지정</u>-----. 1. ----- <u>공장등급의 지정</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58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u> 3. <u>제58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u> 4. <u>제58조제5항</u>-----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u>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공장등급의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u> ③ ----- <u>공장등급의 지정</u> --- ----- -----.

개정안 제59조는 공장등급의 지정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지정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공장등급지정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59조제1항15)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철강구조물 공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제1호), 제58조제3항16)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제3호)에는 그 공장인증을 필요적(제1호) 또는 임의적(제2호 및 제3호)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 제5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안 제1항제2호 신설)와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안 제1항제3호 신설)를 공장등급의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지정이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공장등급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안 제2항 신설) 하고 있음.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정기심사와 이전심사 및 실태점검은 해당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6)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장의 제작능력에 대한 심사와 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장의 등급지정 여부 및 해당 등급(1~4급)¹⁷⁾¹⁸⁾을 정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장등급지정 제도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지 않거나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장등급지정 취소와 같은 제재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공장등급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공장등급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공장이 공장등급지정 후에도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지정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요건에 정기심사, 이전심사 및 실태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지정 취소 후 1년 동안 재지정 신청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동의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③ 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18)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공장의 인증제도를 공장등급지정제도로 전환하더라도, 등급의 분류는 현행법령과 같이 4개 등급으로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함.

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 공장인증 등급별 제작능력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0)

- 인증 분야는 교량(강교)과 건축분야로 구분,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
- 교량 및 건축 분야의 등급별 제작능력 기준은 구조물의 규모와 용접 두께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음

등급	제작 능력	
	교량 분야	건축 분야
1급	모든 교량	모든 건축물
2급	가. 일반교량 나.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특수교량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 \leq 50\text{mm}$ 나.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3급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 육교(특수육교 제외)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 SS400급 강재: $t \leq 30\text{mm}$ - SM490급 강재: $t \leq 25\text{mm}$ 나.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4급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 이하인 인도전용 육교(특수육교 제외)	가.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t): $t \leq 16\text{mm}$ 나. 처마높이 20m 이하(최대 경간 30m 이하)

<비고>

1. "특수교량"은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교량 및 교각과 교각 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2.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을 말한다.
3. "특수육교"는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 보도육교를 말한다.
4.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해당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 인증분야 · 등급별 현황

○ 총 72개 인증업체: 교량 14개, 건축 58개('24.12.31. 기준)

합계	교량분야					건축분야				
	소계	1급	2급	3급	4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72	14	7	2	5	0	58	25	17	11	5

○ 교량 및 건축 분야의 연도별 인증현황 추이(누계)

